

# 한국 기독교코칭학회 정관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법인은 한국 기독교코칭학회(이하 학회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Korea Christian Coaching Academy 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또는 경기도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운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능별 위원회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정관에서 기독교코칭 이라고 함은 -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, 예수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며,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성코칭을 말한다.

제4조(목적)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.

- CORE VALUE : 믿음, 소망, 사랑, 섬김, 세상의 빛과 소금
- MISSION : 기독교 영성코칭을 통하여 -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도록 기여한다.
- VISION : 교회 지도자들의 영성코칭 능력 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.
  - 1) 케리그마 : 성부, 성자,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 하며, 영성코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.
  - 2) 디 다 케 :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, 연구 발표등 학술활동과 지도력의 개발과 훈련.
  - 3) 코이노니아 : 전 회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경조사 협력.
  - 4) 디아코니아 : 학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,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향한 봉사과 섬김 활동.

제5조(사업)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Global Spiritual K- Christian Coaching Model 개발
2. 기독교 코치자격 인증과 프로그램 인증

3. 기독교코치자격의 “역량강화” 차원의 공동 학술 연구발표, 강의, 기독교영성코칭 컨퍼런스 등의 개최.

4.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와 연구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.

5.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코칭선교사 파송등 제반사업.

## 제2장 회 원

### 제6조(회원의 구성)

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

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기독교 코칭 자격을 갖고 있거나, 입회 후 6개월 이내에 기독교 코칭 프로그램을 수료하고,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추기로 약속한 사람.

(본회 가입 후 1년 이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 할 경우에는 자동 탈회가 된다.)

###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
2.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
3.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

② 학회의 입회금과 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 제8조(회원의 입회 및 탈퇴)

①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승인한다.

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.

③ 한번 탈퇴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을 불허한다.

제9조(회원의 징계) 학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임 원

#### 제10조(임원의 종류, 정수와 자격)

-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  - 1. 회장 1인
  - 2. 부회장 3인 이하
  - 3. 이사 7인 이상 120인 이하
  - 4. 감사 2인
  - 5. 사무총장 1인
  - 6. 서기, 회계 및 직능별 위원장과 해외지국장 다수.
- ②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(평생회원)으로 한다.

#### 제11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같은 직무를 3회(9년)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) 임원은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 되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취임한다.

#### 제13조(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, 운영이사회 의장이 되고,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장의 지명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 관장한다.

#### 제14조(이사회회의 구성과 직무)

- 1. 이사회
  - ① 이사회 는 일반이사회와 운영이사회, 후원이사회로 구성된다.
  - ② 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운영이사회에서 임명하며, 임원과 서기, 회계 및 직능별 위원장, 해외지국장등을 맡는다.

③ 이사장은 운영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## 2. 운영이사회

① 회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,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7명 이상 24명 이하의 운영이사를 지명한다. 운영이사의 직무는 본 회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학술원장, 이사장, 후원이사회장, 서기, 재무는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.

③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## 3. 후원이사회

①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 모금을 위한 후원이사회를 구성한다. (인원제한은 없다)

② 후원이사는 본회에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하신 분들 중에 후원이사장 추천으로 운영이사회에 보고하고 임명한다.

③ 후원이사장은 회장이 이사장이 협의하여 추대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회장이 이사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며,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회의 재산사항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시하는 일
2. 총회 또는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
3.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## 제4장 총회

### 제16조(총회의 구성)

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
### 제17조(총회의 종류와 소집)

①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(시기는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.)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
1. 운영이사회 소집결의가 있을 때
2. 이사회 결의로 이사장이 요청할 때

④ 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, 개최 7일 전까지 공지한다.

제18조(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주요사항

제19조(의결 정족수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20조(재원)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회원의 회비 : 평생회비는 1백만원으로 하고, 일반 회비는 별도로 정한다.
2. 후원이사회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
제21조(회계 연도)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
## 제7장 보칙

제22조 (학술원, 분과위원회) 학회는 연구학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, 학술원을 설치하고 이사가 원장을 맡으며, 각 위원장은 이사 중에 직능 별로 선정하여 회장이 지명하고,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 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3조(시행세칙)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본 정관은 2021년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부터 적용된다.

제정 : 2021년 3월 19일

개정 : 2022년 1월 7일